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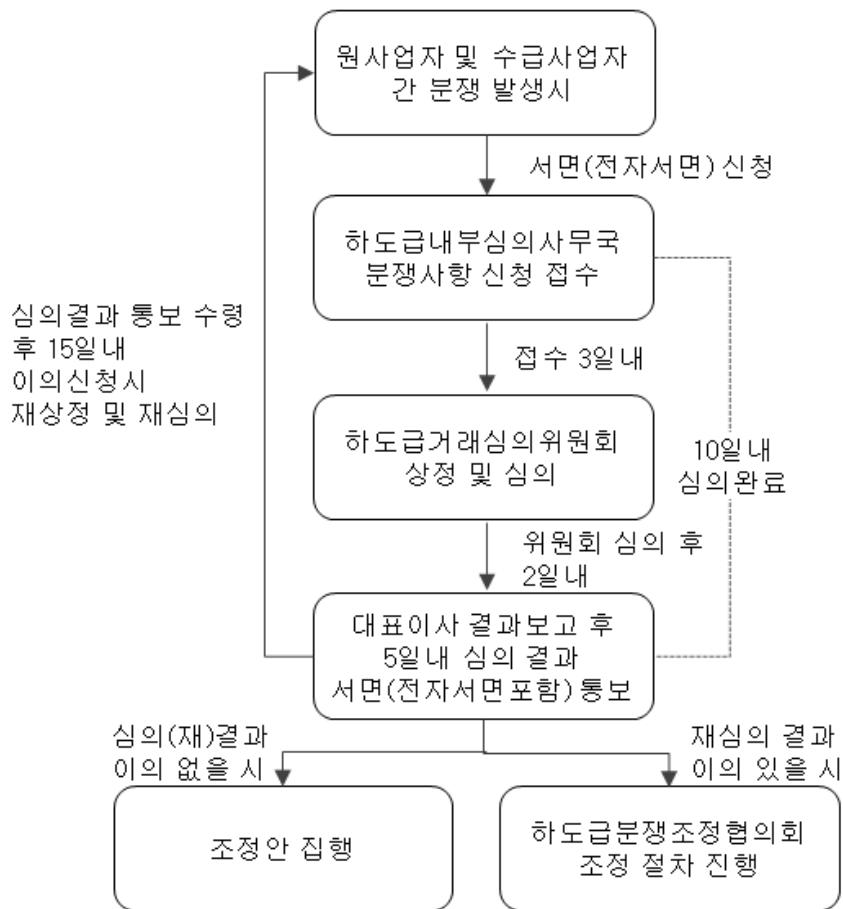
## 1.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절차<sup>1</sup>

(1) 하도급거래분쟁조정 신청 시, 접수 3일내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심의를 개최한다. 심의결과는 2일내 대표이사 보고 후 수급사업자에 5일내 서면으로 내용 통지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면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는 이의 심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하여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2)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절차상 통지 및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서면 포함)

(3) 파트너사의 요청 시 파트너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절차(표) >



<sup>1</sup> 롯데제과 하도급거래및공정화관리규정 제12조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절차

## 2. 하도급거래분쟁조정 신청

(1)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이의 신청의 방식은 서면, 전자서면 및 롯데제과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ttp://www.lotteconf.co.kr/Charlotte/inquiry.asp?mn=040500>)

(2) 기타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롯데제과 파트너사 지원 조직인 '준법경영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준법경영팀 업무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준법경영팀	황자영	<a href="mailto:jayhwang@lotte.net">jayhwang@lotte.net</a>
	김성민	<a href="mailto:sminiga@lotte.net">sminiga@lotte.net</a>
	강서일	<a href="mailto:seoilene@lotte.net">seoilene@lotte.net</a>

※ 준법경영팀 HOT-LINE : 02-2670-6983